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제출용]

등기번호	493427			
등록번호	110111-4934273			
상 호 주식회사 아이티아이즈 (ITEYES Inc.)				2020.10.15 변경 2020.10.29 등기
본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5층(여의도동, 기계진홍회관 본관)				2015.01.27 변경 2015.02.03 등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teyes.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 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 국경제신문에 한다.				
1주의 금액 금 500 원			2020.11.30 변경 2020.12.04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 주				2020.10.15 변경 2020.10.2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전환상환우		4,266,680 주 4,000,000 주 266,680 주	금 2,133,340,000 원	2020.12.29 변경 2020.12.30 등기
1. 전산시스 1. 정보시스 1. 정프트워크 1. 정프로처리 1. 정류터 1. 전지지털된 1. 경영정도 1. 부동산우 1. 산업용	및 주변기기, 통신기 위래업 콘텐츠 제공 및 판매인 보 컨설팅 임대업 로프, 와이어 수출입	력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 판매 및 임대업 업	<2015.08.07 추가 2	2015.08.11 등기>
1. 로프, 와이어 소재 낙석방지책 및 보호망 수출입업				2015.08.11 등기>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 인번호를 입력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개발



발행번호 11002040274010001151001120072214035914111181105161 1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공급, 자문업

핀테크, 의료, 농업관련등 데이터분석

1.정보통신공사업

발급확인번호 4271-AAVE-VSQT

추가

추가

2015.08.11

2019.01.30

<2015.08.07

<2018.12.26

등기>

493427

1 기타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 사업일체

<2020.10.15 추가 2020.10.29 등기> <2020.10.15 변경 2020.10.29 등기>

1. 기타 위 각호에 판단된 무대 사업일세 \2020.10.13 전경 2020.10.25 중기기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시 이성남 7005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13길 47, 301호(방배동)
2014 년 02 월 10 일 취임 2014 년 02 월 11 일 등기
2017 년 02 월 10 일 중임 2017 년 02 월 16 일 등기
시내이시 이성남 7005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41-11(방배동)
2018 년 07 월 12 일 주소변경 2018 년 07 월 20 일 등기
시내이시 이성남 70050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곶길 33-1, 402호(방배동)
2019 년 06 월 25 일 주소변경 2019 년 07 월 05 일 등기
2019 년 00 월 23 일 구오년경 2019 년 07 월 03 일 8기 2020 년 02 월 10 일 중임 2020 년 02 월 17 일 등기
사내이사 이성남 700503-******
2020 년 10 월 15 일 변경 2020 년 10 월 29 <u>일 등기</u>
대표이사 이성남 70050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곶길 33-1, 4층 402호(방배동)
2020 년 10 월 15 일 취임 2020 년 10 월 29 일 등기
사내이사 신인근 680810-******
<u>2020 년 10 월 15 일 취임 2020 년 10 월 29 일 등기</u>
사내이사 최재운 700223-******
2020 년 10 월 15 일 취임 2020 년 10 월 29 일 등기
사내이사 이충헌 730115-******
2020 년 10 월 15 일 취임 2020 년 10 월 29 일 등기
사외이사 김규식 601015-*****
2020 년 10 월 15 일 취임 2020 년 10 월 29 일 등기
감사 지재근 690924-*****

# **종류주식의 내용** 전환상환우선주식

2020 년 10 월 29 일 등기

[의결권에 관한 사항]

2020 년 10 월 15 일 취임

- ① "본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 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
- 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결의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본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투자자는 "본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발행
- 가액기준 연 0% 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받는다.
- ②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시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발행번호 11002040274010001151001120072214035914111181105161 1

발급확인번호 4271-AAVE-VSQT

③배당과 관련하여 "본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본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

도의 직전영업 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본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

까지 제40조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④ "본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는 동 미지급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단, "본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청산에 의한 잔여재산배

분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본 항의 우선 분배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② "본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분배금액이 "본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③"본 우선주식"은 "회사"가 본 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발행한 일체의 다른 주식에 우선하여 청산잔여재산의 분배를 받게 된다. "회사"가 "본 우선주식" 발행이후에 추가 증자에 의하여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동 종류주식의 우선적 내용 이"본 우선주식"의 우선적 내용보다 우선할 수 없다.

#### [전화권에 관한 사항]

- ①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5]년경과일까지(또는 존속 기간말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주식전환 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 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 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 한 날짜의 영업시간종료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발행번호 11002040274010001151001120072214035914111181105161 1

493427

-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 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 야 한다.
- ③전환비율 조정은 원칙적으로 우선주 대 보통주의 비율을 1 대 1로 하나 본조 다른 항에 따른 전환조건의 조정 또는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1. "회사"가 "본 우선주식" 신주의 발행 이후 신주의 전환가격의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한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발행가격이 "본 우선주식"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본 항에 의해 전환가격이 조정되지 않는다.

- 2.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 3. "회사"가 타사와 M&A시 절차 진행을 위한"회사" 발행주식의주당평가가액의 70%에 해당

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본 우선주식"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 우선주식" 1 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X 조정 전 "본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교환비율산정을 위한 주당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본 항에서 M&A라 함은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

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 "우회상장"이라고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기업인수 목적회사 포함)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를 추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4.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

으로 한다.

5.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 우선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본 우선주식"의 전환조건이 조정된다.

6. "회사"가 전환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

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7.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발행번호 11002040274010001151001120072214035914111181105161 1

493427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본 우선주식"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 우선주식" 1 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X 조정 전 "본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8. 전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조의 정함에 따른다.
- 9.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 사업 년도 개시 일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10. 본 조에 의거한 전환조건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

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이 액면 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11.본 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본 조 다른 항에 의한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 ④ 본 조에 의한 전환청구 이후에도 "투자자"는 본 계약의 제3장을 제외하고 "회사" 및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본 계약상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 [상환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

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상환 재원을 위하여 준비금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

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1주당 상환가액은 "본 우선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6%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 우선주식" 발행일

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④ "투자자"의 상환권 행사 이후, "본 우선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

에도 이를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함께 제1항의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투자자에게



발행번호 11002040274010001151001120072214035914111181105161 1

발급확인번호 4271-AAVE-VSQT

493427

지급하여야 한다.

⑤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 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제40조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 받을 권리가 있다.

2020 년 12 월 29 일 설정 2020 년 12 월 30 일 등기

#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명의개서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2020 년 12 월 28 일 변경 2020 년 12 월 30 일 등기

# 주 식 매 수 선 택 권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3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2)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기명식 우선주식 또는 전환주식으로 한다.
  - 2)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상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발행번호 11002040274010001151001120072214035914111181105161 1

발급확인번호 4271-AAVE-VSQT

493427

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1.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1.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0 년 10 월 15 일 설정 2020 년 10 월 29 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2012 년 08 월 07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2 년 08 월 07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과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1년 05월 1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002040274010001151001120072214035914111181105161 1

발급확인번호 4271-AAVE-VSOT

발행일:2021/05/10